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일반공급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	○	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	본인	당사 견본주택 비치
	○		청약통장순위 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서비스(www.applyhome.co.kr)에서 발급 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(신청하고자 하는 청약1순위 신청용으로 발급) ※인터넷청약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순위확인서 생략
	○		인감증명서 인감도장	본인	본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 필수(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)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포함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포함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'상세'로 발급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(상세)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 존속	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 비속	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]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(상세)	직계 비속	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 비속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 존속	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
대리인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당첨자 서류접수 위임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